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4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41번지 일원
3. 면적 또는 규모
 - 도로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중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2	102	8~13.5	국지 도로	84.2	대곡동 741	대곡동 95-4	일반 도로	-	-	-

- 도로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2-102	○ 신설 - 연장(L) : 84.2m - 폭(B) : 8 ~ 13.5m	○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, 사용 중인 타 지역 도로와의 연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함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/> 열람 가능)

